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전문개정 2019. 1. 1.
개정 2019. 1.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와 본교 학칙 제2조의2,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재교육형)으로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학부(전공)를 말한다.

② “모체학과”라 함은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제 3 조(계약주체의 범위) ①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②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재교육형의 권역은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채용조건형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 4 조(명칭 및 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 6 조(설치 및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다.

③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본교 수업연한에 따라 정하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한다.

제 7 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체와 학생의 부담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산업체 등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 8 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기간 내에 산업체 등 또는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 종료 또는 폐지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 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퇴직 등) ①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취득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고 졸업필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 시까지 동종업계 취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사운영

제 11 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와 입학자격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계약학과인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입학일 기준) 재직할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여야 한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학생의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 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와 학생 선발은 특별전형 원칙으로 하며, 입학 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②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③ 본교 계약학과와 직전학기 제적생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1개 학기가 경과한 이후에 신·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제 13 조(학기)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하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② 계절학기의 개설기간은 8주 이내로 하며, 직전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5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 및 제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학과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한다.

②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 16 조(혼합형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할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7 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학점 기준)으로 한다.

② 수업은 대학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시설(소유 또는 임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제 18 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해당 계약학과에서 지정하는 편성표에 따라 일괄 등록하며, 복학 또는 9차 이상 등록 등으로 인한 개별 수강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상 본인의 수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강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과목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성적) ① 학사학위과정의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A등급이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적평가 방법은 시험성적(중간시험, 기말시험 등) 60%, 과제물·출석 등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다음 표에 따라 등급으로 산출하되, 백분율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평 점	환산점수	분포비율
A+	4.5	95 ~ 100	40% 이하
A ⁰	4.0	90 ~ 94	
B+	3.5	85 ~ 89	80% 이하
B ⁰	3.0	80 ~ 84	
C+	2.5	75 ~ 79	20% 이상
C ⁰	2.0	70 ~ 74	
D+	1.5	65 ~ 69	
D ⁰	1.0	60 ~ 64	
F	0	0 ~ 59	

제 20 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은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③ 학점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전 산업체경력 자료를 토대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학업상황 통보)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 22 조(산업체 재직 확인) ①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개시 전월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하여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3 조(졸업학점 및 학위수여) ① 학칙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각 학위과정별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전공 48학점/교양 1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 총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의 설치 운영기간동안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게는 한 학기에 한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24 조(학사 적용) ① 계약학과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군입대, 출산, 입원(4주 이상)으로 인한 경우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예외 사유에 의하여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장의 교육지원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협약기간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 25 조(대학원생 학사운영) 대학원생의 수강신청, 성적, 졸업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4 장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제 26 조(설치)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관장하는 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제 27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② 대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산학연구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해당 학과 교원 1인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 28 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29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체 등과의 계약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경비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학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30 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2 조(특약사항)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산업체 등과의 개별적인 특약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 33 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학칙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계약학과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1.21)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

1. 대학(개정 2019. 1.21)

연도	단과대학명	학과명	형태	학위명	입학구분	설치·운영기간	정원
2015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5.3.1.~2019.2.28	120
					편입	2015.3.1.~2017.2.28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5.3.1.~2019.2.28	120
					편입	2015.3.1.~2017.2.28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5.3.1.~2019.2.28	400
				편입	2015.3.1.~2017.2.28		
소 계							640
2016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6.3.1.~2020.2.29	120
					편입	2016.3.1.~2018.2.28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6.3.1.~2020.2.29	120
					편입	2016.3.1.~2018.2.28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6.3.1.~2020.2.29	400
				편입	2016.3.1.~2018.2.28		
소 계							640
2017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편입	2017.3.1.~2019.2.28	120
					신입	2017.3.1.~2021.2.28	120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편입	2017.3.1.~2019.2.28	
					신입	2017.3.1.~2021.2.28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7.3.1.~2021.2.28	400
				편입	2017.3.1.~2019.2.28		
소 계							640
2018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8.3.1.~2022.2.28	120
					편입	2018.3.1.~2020.2.29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8.3.1.~2022.2.28	120
					편입	2018.3.1.~2020.2.29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8.3.1.~2022.2.28	400
				편입	2018.3.1.~2020.2.29		
소 계							640
2019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	2019.3.1.~2023.2.28	50
					편입	2019.3.1.~2021.2.28	5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9.3.1.~2023.2.28	50
	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미용예술학사	편입	2019.3.1.~2021.2.28	50
	미용예술대학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	미용예술학사	신입	2019.3.1.~2023.2.28	20
소 계							220

2. 대학원(개정 2019. 1.21)

연도	대학원명	학과명	형 태	학위과정	학위명	설치·운영기간	정원
2016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석사	경영학석사	2016.3.1.~2018.2.28	60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6.3.1.~2019.2.28	40
	소 계						100
2017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7.3.1.~2020.2.28	40
	소 계						40
2018	경영문화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석사	경영학석사	2018.3.1.~2020.2.28	60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재교육형	박사	경영학박사	2018.3.1.~2021.2.28	40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과	재교육형	박사	문화예술학박사	2018.3.1.~2021.2.28	40
	소 계						140